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음 ZIP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위한 용어 안내



헛갈리는 용어들 모두 갖고 왔다람!
다람이가 한번에 알려주겠다람!!





용어	내용
자산형성 지원사업	매월 통장가입자가 본인 저축 시,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고, 지급 조건에 해당하면 목돈으로 지급하는 정부사업
가입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가입한 자
본인적금 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가 본인 적금을 납입하는 계좌
지원금 적립계좌	본인 저축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는 계좌
근로 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너무 쉽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달람!






용어	내용
유지기준- 소득상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유지를 위한 월 근로·사업소득 최대 금액
유지기준- 소득하한	희망저축계좌 I 유지를 위한 월 근로·사업소득 최소 금액
중도인출 (분할해지)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중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일부 인출 가능 (하나원큐 어플 또는 은행방문 시 즉시 인출 가능) * 희망저축계좌·E,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적립중지	사업 참여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실직 등) 발생 시, 사전에 신청하여 해당 기간만큼 저축을 중지하는 제도
해지	가입자로부터 지급, 일부지급, 환수 사유 발생 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개발원, 은행 등에서 처리하는 업무

아직 중도인출, 적립중지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적립중지 카드뉴스 참고바란다람!





용어	내용
지급	가입자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인저축액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원받는 해지유형
환수	가입자가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인저축액과 이자만 수령 가능한 해지유형
일부지급	해지유형 중 하나로 지원요건을 일부 충족하여 정부지원금을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본인 포기 제외)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문의하길 바랍니다!

